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2월 21일

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자 원

나. 제안이유

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·
개선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회관을 관리 및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명시(안 제4조제2항)
- 사용료 감액관련 자구 통일(안 제13조제1호 및 제4호)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회관을 관리 및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**위탁 운영의 철회시 까지에서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 기간인 5년 이내로** 변경하여 위탁 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